

협회기사

제 5회 이사회

일시 : 1971년 3월 11일

보고 사항

1. 제 2종 및 제 5종 공장 증별 확정

제 2종 공장

특수한 구조를 요하지 아니하고 공작불 기계 설치 원동기 설치 및 내부시설물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외곽 구조만을 설계할 수 있는 공장

제 5종의 특수 공장

원자력공장, 시멘트공장, 비료공장, 정유공장, 제철공장, 제강공장, 제련공장, 방직공장, 도자기공장, 전자제품공장, 관유리공장, 자동차 공장차량공장, 제분공장, 총포화약공장, 제지공장, 포도당공장, 제과공장, 식품가공공장, 피혁공장, 인쇄공장, 합성수지제품공장, 화학섬유공장, 화학제품공장, 냉동공장, 기계제작공장, 기타 기계설비에 따라 공장의 구조설비 및 계획이 현저히 좌우되는 전기 각 공장에 준하는 공장

2. 노동청 요청에 의하여 동청 산업안전 보건 전문위원으로 이 봉로 감사 위촉

부의 사항

1 작성된 주택 증별 구분표 시안을 보수 기준 제 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 결의하다.

설계보수 요율표중 건축물 증별 구분

제 1종의 주택 점포 참고

- 가 지붕틀의 구조가 목조로된 목조(순 한국식 주택 제외) 부록조 벽돌조의 단층건물로서 연면적이 60평방미터 미만의 점포 및 주택
- 나 지붕틀의 구조가 목조로된 목조 부록조 벽돌조의 단층 건물로서 연 면적이 825평방미터 미만의 참고

제 2종의 주택

가 연면적이 165평방미터 미만의 목조 부록조 벽돌조의 주택

제 4종의 주택

- 가 석조, 철근콘크리트조, P. C조이거나 연면적이 16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 나 온수 및 증기난방 시설을 하거나 냉방시설

을 하는 주택

2 2층직에 대한 정의 질의(부산지부) 설계사무소 개설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2층직으로 판정한다

- ① 공무원에 임용되었을 경우
- ② 공공단체의 직원으로 채용되었을 경우 (촉탁, 고문, 자문위원 등은 제외)
- ③ 타인에게 고용되어 고정 봉급을 지급받을 경우

3. 뺏지

총무이사과 사업담당이사 및 사무처장이 상의하여 속히 제작키로 결의

제 6회 이사회

일시 : 1971년 3월 17일

부의 사항

1. 3억 이상 공사의 감리보수 요율의 체감 곡선 설정

- ① 제 1종의 건축물은 3억 이상의 공사가 없으므로 제외
- ② 최고 공사비는 앞으로 닥아올 공사를 고려 100억원으로 결정
- ③ 3억원 이상 100억원까지의 감리보수요율 체감 곡선은 제 2종의 최고 공사비를 0.6% 결정 이를 기준으로 체감 곡선을 작성 적용키로 한다

2. 월정회비 장기 체납 회원 조치

서울지부소속 회원중 월정회비 장기 미납자에 대하여 3월 17일 제 6회 이사회에서 정관 제 11조 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징계키로 결의

징 계 사 항

- ① 3개월 이상 체납자 1명 전책
 - ② 6개월 이상 체납자 24명 6개월 회원자격 정지
 - ③ 12개월 이상 체납자 6명 회원자격정지
- 3 건설백서 발간을 위한 원고 청탁
각시도 지부에 공문(기 건설백서 발간 목차안 첨부)을 발송하여 다수의 원고를 받도록 결의
4. 표준폼셈표 인쇄 배부

예산과 시기를고려 본회에서 인쇄하게 되면 늦으니 각시도 지부에서 직접 건설협회 또는 건설협회 각시도 지부에서 구입해 쓰도록 결의